

예산총칙

2024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991,796,144	29,753,884
일반회계	936,961,528	28,108,846
특별회계	54,834,616	1,645,038
공기업특별회계	52,201,502	1,566,045
하수도사업 특별회계	24,660,110	739,803
상수도사업 특별회계	27,541,392	826,242
기타특별회계	2,633,114	78,993
의료보호비 특별회계	2,451,819	73,555
주차장사업 특별회계	181,295	5,439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24년 채무부담 행위는 [해당없음]으로 한다.

제 4 조 2023년 명시이월 사업은 불임 "명시이월 사업조서"와 같다

제 5 조 계속비 사업은 [해당없음]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467,01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70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또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